



모두가
행복한 **희망완도**



— 2015. 5. 27. ~ 5. 29.(3일간) —

2015년 농업기술센터 정기 종합감사 결과 보고



완 도 군
(기 획 예 산 실)

2015 농업기술센터 정기 종합감사 결과 보고

- ❖ 2013년 종합감사 후 3차례 자체 교육 등 업무연찬에 적극 노력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분야 지적사항이 없었으며,
- ❖ 2015. 5. 27. ~ 5. 29. (3일간) 실시한 2015년 종합감사에는 농촌지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사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어 지속적인 업무연찬이 필요함.

감사 개요

- 감사기간 : 2015. 5. 27. ~ 5. 29. (3일간)
- 감사범위 : 2013. 6. 1 ~ 감사일 현재까지
- 감사요원 : 감사담당 외 3명(최진우, 조성영, 김채호)
- 지적사항

행정상			재정상				신분상				
계	시정	주의	계	추징	회수	기타	계	장계	경고	훈계	주의
11	5	6	1,318	-	1,318	-	-	-	-	-	-

* 회 수 : 시설공사 미시공 995천원, 용역 이윤 과다계상 323천원

세부 지적사항

일반 행정 (1)

① 농업인상담소(노화,고금) 청사경비 소홀

- 공휴일 등 농업인상담소장 부재시 및 청사 보안관리를 위하여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계약(연 125만원)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

- 그럼에도, 2013년도 8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노화읍 농업인상담소는 50회, 고금면 농업인상담소는 24회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하지 않고 퇴청하는 등 청사경비 공백을 초래함

농촌지도관리(6)

① 농촌지도 시범사업 객관적인 평가기준표 마련 미흡

- 농업인이 농촌지도 시범사업을 신청할 경우 각 사업별 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「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」 평가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순위를 선정하여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 함
- 사업자 선정에 따른 재배기술, 경영능력 및 농가 의욕도 항목평가 시 객관적 기준 및 증빙자료 없이 출장자 의견만으로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기준표 마련이 미흡 함

② 농촌지도 시범사업(민자본) 사후관리 소홀

-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67조 및 제70조에 의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·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 등을 작성·비치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·점검하여야 함
- 이에 따라,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9종 151건의 농촌지도 시범사업(민자본) 을 추진하면서 시설과 장비에 대한 관리책임자 미지정 및 관리·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 하여야 함에도 단 한차례도 점검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

③ 민간자본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부적정

-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(2회) 지원 시 첫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함
- 그럼에도,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중복지원 대상 4농가에 대하여 기 지원 2013년 보조사업에 대한 개별 사업성과평가 없이 보조사업자로 선정 하였음

④ 민간자본 보조사업 장비관리 소홀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민간자본사업으로 구입한 장비는 5년 동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
- 2014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(보조금 5,000만 원)으로 구입한 20종 장비 중 전동대차 5대, 예초기 8대등이 회원에 대여된 상태임에도 관리대장 미작성 등 민간보조사업으로 구입한 장비의 관리를 소홀히 함

⑤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요 재산관리 소홀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는 반기별로 점검사항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
- 그러나, 2013년 기후변화 대비 감귤류 시설재배 시범사업(2건 300백만원)이 2013. 12월에 완료 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하우스, 보일러 등 중요 재산에 대한 보고(점검)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

⑥ 민간자본 보조사업 준공검사 업무소홀

- 2013년도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사업(15백만원)을 추진함에 있어 관수시설은 사업계획서(정산서)에 따라 물탱크를 설치 되어야 함.
- 그러나, 준공검사조서에 첨부된 사진에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관수모터만 설치하고 물탱크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준공처리하는 등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(물탱크는 감사기간 중 설치 하였음)

세 출 (2)

① 5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

-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시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시 집행목적, 참석자 등을 기재하여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함
- 그럼에도,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전 직원 및 가족송년회 식사비와 해조류 박람회 근무직원 격려 식사비로 8건 5,442천 원을 집행하면서 집행목적, 참석자 등을 기재하지 않고 지출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

② 지방재정 청백-e 상시모니터링 업무 소홀

- 「완도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백-e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자는 추출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·수정·조치 등을 하여야 함
- 그럼에도,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3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상시 모니터링된 234건 중 114건을 조치하지 않는 등 청백-e시스템 모니터링 업무를 소홀히 함

공 사 계 약 (2)

① 시설공사 감독 · 준공검사 소홀

- 2014년 “농업시험 000 방풍벽 설치공사” 는 설계서에 따라 심도 1m 깊이로 기초를 설치하여 방풍벽을 설치해야하나, 기초심도가 0.8m로 설계서보다 0.2m가 부족 시공되었음에도 재시공 또는 감액조치 없이 준공처리 후 대가를 지급하여 제경비 포함 995천원 과다 지급함

② 강소농 정밀경영컨설팅 민간위탁 용역비 산출 부적정

- 2013년 “강소농 000 컨설팅 민간위탁 용역” 계약금액 1,880만 원을 산출하면서 이윤을 인건비 직접비용 간접비용의 합계액에 대한 10%가 아닌 계약금액에 대한 10%로 과다 계상하여 323천원을 과다 지급 함.

* 계약금액 = 인건비 + 직·간접비용 + 이윤 + 부가가치세